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91 발의연월일: 2025. 4. 28.

발 의 자:김성원·김정재·이헌승

김은혜 • 한지아 • 김선교

고동진 • 박충권 • 박성훈

이종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, 해당 사고로 발생한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, 양도·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).
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의2(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) ① 제37조제9항(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었는 자[제37조제10항(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.이하 같다]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전체 "손해배상금"이라 한다)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다만,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・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39조의3(압류 등의 금지) ① 제37조제9항(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39조의 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9조의2(손해배상금 수급전용
	계좌) ① 제37조제9항(제38조
	의3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
	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손해를
	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[제37조
	제10항(제38조의3제6항에 따라
	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
	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
	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.
	이하 같다]는 손해배상을 받는
	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
	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
	는 금전(이하 이 조에서 "손해
	배상금"이라 한다)을 손해배상
	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
	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 다만,
	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
	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
	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
	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	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
	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

<신 설>

<u>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</u> <u>한다.</u>

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·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제39조의3(압류 등의 금지) ①
제37조제9항(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)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 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 권은 압류할 수 없다.